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53호 2016. 3. 2. (수요일)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 2133호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 . . . . . 2
- 하동군 조례 제 2134호 「하동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 . . . 3
- 하동군 조례 제 2135호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10
- 하동군 조례 제 2136호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12
- 하동군 조례 제 2137호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14
- 하동군 조례 제 2138호 「하동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16
- 하동군 조례 제 2139호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 . . . 18
- 하동군 조례 제 2140호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 . . . 20
- 하동군 조례 제 2141호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21
- 하동군 조례 제 2142호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24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6-16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 . . . . 27
- 하동군 고시 제2016-18호 농어촌 새뜰마을(범왕지구)사업 시행계획고시 . . . . . 29
- 하동군 고시 제2016-19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고시 . . . . . 32
- 하동군 고시 제2016-20호 농어촌관광휴양사업(관광농원)승인취소고시 . . . . . 37
- 하동군 고시 제2016-21호 금성조선농공단지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 . . 38
- 하동군 고시 제2016-2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110차) . . . . . 51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6-223호 섬진강 후계목 육묘장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 . . . 54

|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

( 2 ) 제 453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2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33호

###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2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34호

#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대책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하 동 군 공 보

### ( 4 ) 제 453 호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과 이전 및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홍수 방어벽 설치,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홍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말한다.
9. “행위자”란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행위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위자가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건축 및 형질변경 행위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①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누구나 해당 지역이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때, 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지형도면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을 표시하고 주요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에 해당 지역이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고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 별표 1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고령자 및 저시력자 등의 인식 능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 해당 지역이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고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 별표 2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고령자 및 저시력자 등의 인식 능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행위자는 침수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 제 453 호

1.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성토 및 정지 작업 등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행위자는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 위험이 있는 비탈면의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까지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의 공공시설물 우선 정비) 군수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 공공시설물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자연재해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 안내판 예시   | 안내판 설치 요령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b>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b></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br/>문의 하동군청 (055-880-2251)<br/><b>하 동 군 수</b></p> </div>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침수위선(적색) →</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문자로 침수위선 표기</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침수흔적(청색 삼각형)</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p> </div>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li> <li>○안내판 규격: 가로 1.2m<br/>세로 1m 내외</li> <li>○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li> <li>○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br/>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li> <li>○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li> <li>○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li> <li>○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br/>(예; ▶ 태풍루사, 2002)</li> <li>○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li> <li>○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li> </ul> |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6조제2항 관련)

| 안내판 예시  | 안내판 설치 요령  |
|---|--|
|  <p style="text-align: center;"><b>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b></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br/>문의 하동군청 (055-880-2251)<br/><b>하 동 군 수</b></p> </div>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내판 규격: 가로 1.2m<br/>                  세로 1m 내외</li> <li>○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li> <li>○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li> <li>○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li> <li>○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li> <li>○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li> </ul> |

( 10 ) 제 453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2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35호

###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를 “단원이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해임)</p> <p>1. <u>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u></p> <p>2. ~ 5. (생 략)</p><br><p>제9조(소집)</p> <p>① <u>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②·③ (생 략)</p> | <p>제6조(해임)</p> <p>1. <u>단원이 소재가 불명한 경우</u></p> <p>2. ~ 5. (현행과 같음)</p><br><p>제9조(소집)</p> <p>① <u>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2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36호

###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마목”을 “영 제74조제6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군 소속 실과소장 중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가 된다.”를 “실과소장과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마목에 따라 군이 지급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p>   | <p>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74조제6호에 -----<br/>-----<br/>-----.</p>   |
| <p>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p> <p>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③ (생 략)</p> <p>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u>군 소속 실과소장 중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가 된다.</u></p> <p>⑤ (생 략)</p> | <p>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br/>-----<br/>-----<u>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실과소장과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2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37호

###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로 한다.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p>                           | <p>제2조(정의) -----<br/>-----.</p> <p>1. (현행과 같음)</p> <p>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 3 호<br/>-----<br/>-----<br/>-----</p> |
| <p>제3조(면제대상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단,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여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p> | <p>제3조(면제대상 등) -----<br/>-----<br/>----- . &lt;단서 삭제&gt;</p>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2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38호

###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하동군 금성면 해안로 198)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지원협의체는 사업 종료 시까지 금남면, 금성면 주민대책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제1조(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적용례)</u> 제 6조의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p> <p><u>제3조(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특례)</u> 제6 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하동군 금성면 해안로 198)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주민지원협의체는 사업 종료 시까지 금남면, 금성면 주민대책위원회로 한다.</p> |

하 동 군 공 보

( 18 ) 제 453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2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39호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최초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 영업(소)의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등)은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      |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1호 | 100           | 200  | 300  |
|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호 | 100           | 200  | 300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2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40호

###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2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41호

###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 「농업·농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하고, 같  
은 조 같은 호 기목 중 “ 「대통령령」 ”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으로, 같  
은 조 같은 호 나목 중 “ 「대통령령」 ”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이자율 결정) 융자금 이자보조 이율은 군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 22 ) 제 453 호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                     |                    |             |              |             |                    |
|---------------------|--------------------|-------------|--------------|-------------|--------------------|
| 신<br>청<br>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 (집)<br>번호 (휴대폰) |
|                     | 주 소                |             |              |             |                    |
| 사<br>업<br>분<br>야    | 영 농<br>경 력         |             | 영농교육<br>이수실적 | ·과정명 : / 시간 |                    |
|                     | 사 업<br>분 야         |             | 사업내용         |             | 사 업<br>규 모         |
| 신<br>청<br>내<br>용    | 사 업<br>대<br>상<br>지 | 군 읍·면<br>번지 | 리            | 농지이용계획      |                    |
|                     |                    |             |              | 농업진흥지역안     | 지구                 |
|                     |                    |             | 농업진흥지역밖      | 지구          |                    |
| 사<br>업<br>비<br>(천원) | 계                  | 융 자         |              | 자부담         |                    |
|                     |                    |             |              |             |                    |

하동군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하 동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 1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발행)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p> <p>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p> <p>나.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p> <p>2. ~ 4. (생략)</p> | <p>제2조(정의) -----<br/>-----.</p> <p>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p> <p>가. -----<br/>-----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br/>-----</p> <p>나. -----<br/>-----<br/>-----<br/>-----<br/>-----<br/>-----<br/>-----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p> <p>2. ~ 4. (현행과 같음)</p> |
| <p>제8조(이자 부담비율 결정)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군과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단 부담비율은 군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p>   | <p>제8조(이자율 결정) 융자금 이자보조 비율은 군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p>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2일

## 하 동 군 수 율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42호

###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6개월”을 “12개월”로 한다.

제4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원인자 부담금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되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4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45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과 실제 사용한 비용에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차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한 서면으로 환불이나 추가 납부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 공사비를 <u>6개월</u>의 기간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45조(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br/>① ~ ③ (생략)<br/><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 <p>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 공사비를 <u>12개월</u>의 기간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45조(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br/>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u>원인자 부담금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되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u></p> <p><u>제45조의1(원인자 부담금의 과오납 처리)</u><br/>① <u>제45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과 실제 사용한 비용에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할 수 있다.</u><br/>② <u>제1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차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한 서면으로 환불이나 추가 납부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u></p> |

하동군 고시 제 2016 - 16호

##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지적기준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일

## 하 동 군 수

### ■ 지적도근점(복구)

| 기준점 명 칭 | 기준점 번 호 | 소재지            | 원점 | 좌표        |           | 설치일         | 표지 재질 | 측량성과 보관장소 |
|---------|---------|----------------|----|-----------|-----------|-------------|-------|-----------|
|         |         |                |    | X         | Y         |             |       |           |
| 도근점     | 1609    | 금성면 궁항리 979    | 중부 | 164328.62 | 272683.86 | 2015.12.31.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 도근점     | 1962    | 금남면 진정리 1010   | 중부 | 164943.53 | 274289.07 | 2016.02.03.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 도근점     | 1964    | 금남면 진정리 산104-1 | 중부 | 164751.42 | 274207.37 | 2016.02.03.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 ■ 지적도근점(설치)

| 기준점 명 칭 | 기준점 번 호 | 소재지           | 원점 | 좌표        |           | 설치일         | 표지 재질 | 측량성과 보관장소 |
|---------|---------|---------------|----|-----------|-----------|-------------|-------|-----------|
|         |         |               |    | X         | Y         |             |       |           |
| 도근점     | 3035    | 옥종면 정수리 297-7 | 중부 | 183676.20 | 280151.24 | 2016.01.20. | 맨홀 식  | 하동군청 민원과  |
| 도근점     | 3036    | 옥종면 정수리 337-2 | 중부 | 183788.80 | 280217.66 | 2016.01.20. | 맨홀 식  | 하동군청 민원과  |
| 도근점     | 3037    | 옥종면 정수리 280-5 | 중부 | 183624.68 | 280182.37 | 2016.01.20.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 도근점     | 3038    | 옥종면 정수리 280-5 | 중부 | 183561.75 | 280289.56 | 2016.01.20.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하 동 군 공 보

( 28 ) 제 453 호

■ 지적삼각보조점(설치)

| 점명  | 토지소재                 |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                    |        | 원점 | 평면좌표      |           | 설치일자        | 표지<br>재질 | 비고 |
|-----|----------------------|--------------------|--------------------|--------|----|-----------|-----------|-------------|----------|----|
|     |                      | 위 도                | 경 도                | 표 고    |    | X         | Y         |             |          |    |
| 보76 | 양보면<br>감당리<br>1158   | 35-04-29.<br>1466  | 127-49-56.<br>3500 | 64.264 | 중부 | 275706.04 | 275912.66 | 2016.01.09. | 철재       | 세계 |
|     | 35-04-18.<br>0397    | 127-49-53.<br>6712 | 175397.74          |        |    | 275838.65 | 지역        |             |          |    |
| 보77 | 금성면<br>갈사리<br>1243   | 35-04-12.<br>1513  | 127-49-44.<br>0236 | 84.749 | 중부 | 275179.67 | 275604.72 | 2016.01.09. | 철재       | 세계 |
|     | 35-04-01.<br>0428    | 127-49-41.<br>3436 | 174871.37          |        |    | 275530.70 | 지역        |             |          |    |
| 보78 | 금성면<br>갈사리<br>142-29 | 35-04-03.<br>3509  | 127-49-53.<br>4520 | 55.664 | 중부 | 274910.45 | 275845.87 | 2016.01.09. | 철재       | 세계 |
|     | 35-03-52.<br>2412    | 127-49-50.<br>7725 | 174602.14          |        |    | 275771.85 | 지역        |             |          |    |

하동군 고시 제 2016 - 18호

## 농어촌 새뜰마을(범왕지구) 사업 시행계획

1. 사업의 명칭 : 농어촌 새뜰마을[범왕지구] 사업
2. 사업의 목적 : 낙후된 농촌마을의 기초 인프라 개선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삶의 질 개선
3. 사업비 : 4,212,000천원
  - 국고 : 2,982,000천원, 지방비 : 1,212,000천원, 자부담 18,000천원
4. 주요사업내용
  - 주택정비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 생활안전 저해요소 제거, 지역 경관개선 및 주거기능 강화에 따른 주민들의 정주만족도 향상
      - 슬레이트 지붕철거 10호
      - 주택개량 8호
  - 경관시설정비
    - 마을 담장정비
      -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원 조성을 통한 생활개선
      - 마을공원 조성 3개소
  - 기반시설정비
    - 마을 도로정비
      - 도로 안전사고 발생요인 해소에 따른 이동 안전성, 생활편의성 강화
      - 도로선형 정비 16.2m
      - 안전시설 설치 542m

- 도로결빙 정비 7개소
- 도로측구 정비 104.1m
- 마을 안길정비
  - 마을 주민들의 보행환경 및 이동편의 개선
  - 마을 안길 황토콘크리트 포장 11,530.2m<sup>2</sup>
- 상·하수도정비
  - 주민 생활용수 관리 실시에 따른 생활 안전성 회복 및 기초 생활 여건 개선
  - 취수 및 정수시설 설치 3개소
  - 취수관로 정비 10,736m
- 하천정비
  - 재해, 재난의 사전 방지를 통한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
  - 하천 자연석(전석) 쌓기 331.5m
- 공공이용시설계획
  - 마을회관정비
    - 노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이용편의 및 이용의향 강화
    - 노인 소일거리 나눔공간, 보부상길 쉼터 등 다목적 공간으로의 활용성 강화
    - 원범왕마을 경로당 재건축 1식
- 기타계획
  - 휴먼케어
    - 마을의 경관개선 및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식 확립, 공동체의식 강화
    - 주민참여형 경관프로젝트 1식
    -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1식
    - 전문가 컨설팅 1식

- 주민역량강화

- 사업 이해도 제고,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신규 인적자원 발굴 등 마을 활성화 지원
-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이수 총 6인
- 선진지 견학 총 3회
- 홍보 및 업무추진 1식

5. 사업시행자 : 하동군

6. 사업기간 : 2016. 3. ~ 2017. 12.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의 명세서 (필요한 경우)

8. 기타

2016년 2월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고시 제2016-19호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22.

하 동 군 수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 계획과 연계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동서통합지대 기본 구상에서 제시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동서화합의 선도적 상징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과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이하 "남해안 남중권"이라 한다)은 서로 협의하여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 사무소는 협의회장 관할구역 내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광역개발 및 해양자원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2. 동서화합과 2개 시·군 이상 연계사업 또는 도시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동현안 관련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4. 남해안 남중권 발전 관련 조사 연구 및 자료 수집
5. 화합과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남해안 남중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회원의 자격) 협의회는 회원 자격은 남해안 남중권 현직 시장·군수로 한다.

##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6조(임원의 구성)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2인을 둔다.

② 부회장은 시·군 소속(전라남도, 경상남도)별 각 1인을 둔다.

제7조(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회원은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신의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임기 및 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하고,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장 회의

제9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임원단회의, 실무협의회로 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로 하되, 상·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 : 회장 또는 임원단이 소집한다.
3. 임원단회의 : 필요 안건 발생 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실무협의회 : 안건 발생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실무협의회는 남해안 남중권의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안전 관련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시·군의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사무국장이 된다.
-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의 회의에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11조(회의장소)** 회의 장소는 시·군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회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의 및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현안은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시 회원 상호간에 협의 결정한다.

- ② 임원단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규약 개정 및 당면한 공동현안에 관한 의견 집약
  2. 남해안 남중권 주요현안, 정책 건의 사항 등에 대한 조정
  3. 기타 임원단 회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 관련 세부사항 협의
  2. 협의회 제반사항에 대한 실무적 검토 및 협의
  3. 기타 실무협의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의결정족수)** ① 협의회는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인 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제18조(협의사항의 효력)** ①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② 협의·조정된 사항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 제4장 사무국

**제19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시·군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공무원 파견 대상 시·군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장 소속 시·군 공무원 1인
2. 부회장 소속 시·군 공무원 각 1인

③ 사무국장 및 직원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동서통합지대 조성 및 남해안 남중권 연계·협력사업 총괄
2. 협의회 정기총회 등 회의 운영
3. 남해안 남중권 상생발전 포럼 등 민·관 협력 사업 추진
4. 남해안 남중권 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5.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6. 예산 편성 및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등

**제21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는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협의회는 결정에 따른다.

제5장 재정

제22조(재원) 협회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2. 특별회비, 기부금
3. 기타수입, 적립금이자

제23조(회비) ① 회비는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제24조(회계연도) 협회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예산 및 결산) ① 세입·세출예산은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한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 협회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하되, 부회장 시·군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26조(사무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회 운영에 관한 사무일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27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협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고시 제2016 - 20호

## 관광농원 승인 취소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 8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농원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 규정에 따라 승인취소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관광농원(산들해관광농원)
2. 사업장 위치 :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53-3
3. 사업장 규모 : 5,7240㎡
4. 사업의 종류 : 관광농원
5. 처 분 사 유 : 관광농원 장기간 미운영 등 계속시행 불가능
6. 처 분 내 용 : 관광농원 사업승인 취소
7. 처분연월일 : 2016. 2. 25.

하동군 고시 제2016 - 36호

## 금성조선농공단지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09-48호(2009.12.7), 제2010-44호(2010.12.31), 제2011-34호(2011.8.1), 제2012-68호(2012.12.27), 제2013-48호(2013.9.6), 제2014-50호(2014.6.18)로 지정 승인된 금성조선농공단지 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의2,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하 동 군 수

###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금성 조선농공단지

나.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04-1번지 일원

다. 면 적 : 146,150㎡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기자재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조선기자재 생산단지로 육성하고,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을 통해 하동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 : BN금성개발(주) 천학준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당 초 : 2009. 12. ~ 2016. 2.
- 변 경 : 2009. 12. ~ 2017. 2.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 산업분류코드 | 유 치 업 종    | 면 적(m <sup>2</sup> ) | 구성비(%) |
|--------|------------|----------------------|--------|
| 31     |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 107,970              | 100.0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면 적(m <sup>2</sup> ) |     |         | 구성비(%) | 비 고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합 계    | 146,150              | -   | 146,150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107,970              | -   | 107,970 | 73.9   |     |
| 지원시설용지 | 4,680                | -   | 4,680   | 3.2    |     |
| 공공시설용지 | 32,800               | -   | 32,800  | 22.4   |     |
| 도 로    | 9,970                | -   | 9,970   | 6.8    |     |
| 주차장    | 2,360                | -   | 2,360   | 1.6    |     |
| 공 원    | 7,760                | -   | 7,760   | 5.3    |     |
| 완충녹지   | 12,710               | -   | 12,710  | 8.7    |     |
| 오수처리시설 | 700                  | -   | 700     | 0.5    |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가) 도로 총괄표

## 하 동 군 공 보

( 40 ) 제 453 호

| 류별 | 합 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3   | 672    | 9,970  | 1   | 284    | 3,010  | 2   | 388    | 6,960  | -   | -      | -      |
| 중로 | 2   | 388    | 6,960  | -   | -      | -      | 2   | 388    | 6,960  | -   | -      | -      |
| 소로 | 1   | 284    | 3,010  | 1   | 284    | 3,010  | -   | -      | -      | -   | -      | -      |

### 나) 도로결정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중로  | 2  | 1  | 15     | 국지 도로 | 180    | 갈사리 202-11 (금성해안도로) | 금성조선 농공단지 내        | 일반 도로 | -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    |
| 기정 | 중로  | 2  | 2  | 15     | 국지 도로 | 208    | 중로 2-1호선            | 금성조선 농공단지 내        | 일반 도로 | -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    |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국지 도로 | 284    | 갈사리 222-2 (금성해안도로)  | 갈사리 909-7 (금성해안도로) | 일반 도로 | -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    |

### 2) 주차장계획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1       | 주차장 | 갈사리 202-18 | 2,360   | -  | 2,360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    |

### 3) 공원계획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1       | 금성공원 | 소공원     | 갈사리 354-11 | 7,760   | -  | 7,760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    |

### 4) 녹지시설계획



하 동 군 공 보

( 41 ) 제 453 호

| 구분 | 도면<br>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br>세 분 | 위치            | 면 적 (㎡) |    |        | 최초<br>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            |               | 12,710  | -  | 12,710 |                                   |    |
| 기정 | 1          | 1호<br>완충녹지 | 완충<br>녹지   | 갈사리<br>222-2  | 7,486   | -  | 7,486  | 2009.12.7<br>(하동군고시<br>제2009-48호) |    |
| 기정 | 2          | 2호<br>완충녹지 | 완충<br>녹지   | 갈사리<br>202-18 | 5,224   | -  | 5,224  | 2009.12.7<br>(하동군고시<br>제2009-48호) |    |

5) 상수도시설계획

가) 용수량

| 구 분     | 용수수요량(㎡/일) | 비 고              |
|---------|------------|------------------|
| 계       | 484.4      | 계획용수량 : 484.4㎡/일 |
| 공 업 용 수 | -          |                  |
| 생 활 용 수 | 484.4      |                  |

6) 오·폐수처리시설계획

가) 오·폐수량

| 구 분     | 오·폐수량(㎡/일) | 비 고             |
|---------|------------|-----------------|
| 계       | 56.8       | 계획오수량 : 56.8㎡/일 |
| 산 업 폐 수 | 1.8        |                 |
| 생 활 오 수 | 55.0       |                 |

7) 에너지 및 통신공급계획

가) 전력

| 구 분 | 전력소요예상량(MWh/년) | 비 고             |
|-----|----------------|-----------------|
| 계   | 8,140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

하 동 군 공 보

( 42 ) 제 453 호

나) 통신

| 구 분 | 수요량(회선) | 비 고            |
|-----|---------|----------------|
| 계   | 586     | (주)KT와 협의하여 공급 |

7.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사업비

| 구 분 | 사업비<br>(백만원) | 자금조달계획(백만원) |     |        | 비 고<br>(변경사유 등)     |
|-----|--------------|-------------|-----|--------|---------------------|
|     |              | 국비          | 지방비 | 민자     |                     |
| 기 정 | 26,917       | -           | -   | 26,917 | ·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변경 |
| 변 경 | 27,595       | -           | -   | 27,595 |                     |

나.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 기 정<br>(백만원) | 변 경(백만원) |       |        |       |       |
|---------|--------------|----------|-------|--------|-------|-------|
|         |              | 계        | 기투자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총 투자비   | 26,917       | 27,595   | 8,965 | 11,378 | 4,805 | 2,447 |
| 설 계 비   | 1,100        | 1,100    | 1,100 | -      | -     | -     |
| 공 사 비   | 14,300       | 14,978   | -     | 9,990  | 3,106 | 1,882 |
| 보 상 비   | 6,840        | 6,840    | 6,840 | -      | -     | -     |
| 감 리 비   | 753          | 753      | 218   | 197    | 196   | 142   |
| 부 대 비   | 400          | 400      | 65    | 150    | 150   | 35    |
| 제세공과금   | 10           | 10       | -     | 1      | 1     | 8     |
| 관 리 비   | 890          | 890      | 409   | 174    | 128   | 179   |
| 물가변동비   | 828          | 828      | -     | 392    | 393   | 43    |
| 건 설 이 자 | 1,796        | 1,796    | 333   | 474    | 831   | 158   |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9.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토지

| 구 분    | 면 적(m <sup>2</sup> ) |     |         | 구성비(%) | 비 고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합 계    | 146,150              | -   | 146,150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107,970              | -   | 107,970 | 73.9   | 실수요자 사용   |
| 지원시설용지 | 4,680                | -   | 4,680   | 3.2    | 실수요자 사용   |
| 공공시설용지 | 32,800               | -   | 32,800  | 22.4   |           |
| 도 로    | 9,970                | -   | 9,970   | 6.8    | 하동군에 귀속   |
| 주차장    | 2,360                | -   | 2,360   | 1.6    | 하동군에 귀속   |
| 공 원    | 7,760                | -   | 7,760   | 5.3    | 하동군에 귀속   |
| 완충녹지   | 12,710               | -   | 12,710  | 8.7    | 하동군에 귀속   |
| 오수처리시설 | 700                  | -   | 700     | 0.5    | 실수요자 자체관리 |

하 동 군 공 보

( 44 ) 제 453 호

나. 시설물

| 구   | 분         | 규           | 격 | 수        | 량 | 관리처분계획    | 비고 |
|-----|-----------|-------------|---|----------|---|-----------|----|
| 도로  | 중로 2-1 호선 | B=15.0m     |   | 180.0m   |   | 하동군에 귀속   |    |
|     | 중로 2-2 호선 | B=15.0m     |   | 208.0m   |   | 〃         |    |
|     | 소로 1-1 호선 | B=10.0m     |   | 284.0m   |   | 〃         |    |
|     | 도로 L형 측구  |             |   | 1,237.0m |   | 〃         |    |
| 구조물 | 보강토 옹벽    |             |   | 83.0m    |   | 〃         |    |
|     | L형 옹벽     | H=1.5~5.5m  |   | 46.0m    |   | 〃         |    |
| 우수  | 우수관로      | D450        |   | 426.0m   |   | 〃         |    |
|     | 우수받이      | TYPE-A,B    |   | 48EA     |   | 〃         |    |
|     | 우수연결관     | D300        |   | 267.0m   |   | 〃         |    |
|     | 우수맨홀      | GRP 1호      |   | 6개소      |   | 〃         |    |
|     | 접속T형관     | D450X300    |   | 30개소     |   | 〃         |    |
| 오수  | 오수관로      | D200        |   | 79본      |   | 〃         |    |
|     | 오수맨홀      | GRP 1호      |   | 11개소     |   | 〃         |    |
|     | 오수처리장     |             |   | 1개소      |   | 실수요자 자체관리 |    |
| 상수  | 상수관로      | D80         |   | 379.0m   |   | 하동군에 귀속   |    |
|     | 제수변       |             |   | 10개소     |   | 〃         |    |
|     | 소화전       | 지상식소화전      |   | 2개소      |   | 〃         |    |
| 포장  | ASP포장     | #78         |   | 59.6a    |   | 〃         |    |
| 부대  | 보도용난간     | H1.0 X W2.0 |   | 66경간     |   | 〃         |    |
| 전기  | 가로등       |             |   | 13본      |   | 〃         |    |

10.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 구  | 분                  | 계       | 답      | 도로    | 잡      | 전     | 제방    | 기타     |
|----|--------------------|---------|--------|-------|--------|-------|-------|--------|
| 필지 | 수                  | 75      | 33     | 3     | 26     | 8     | 2     | 3      |
| 면  | 적(m <sup>2</sup> ) | 146,150 | 49,576 | 3,681 | 74,039 | 2,149 | 4,565 | 12,140 |
| 구성 | 비(%)               | 100.0   | 33.9   | 2.5   | 50.7   | 1.5   | 3.1   | 8.3    |

나. 소유자별 현황

| 구 분    | 합 계     | 국유지    |            |             | 공유지   |       | 사유지     |
|--------|---------|--------|------------|-------------|-------|-------|---------|
|        |         | 소 계    | 국 토<br>교통부 | 농림축산<br>식품부 | 소 계   | 하동군   |         |
| 필지 수   | 75      | 5      | 4          | 1           | 1     | 1     | 69      |
| 면적(㎡)  | 146,150 | 19,355 | 8,101      | 11,254      | 1,922 | 1,922 | 124,873 |
| 구성비(%) | 100.0   | 13.2   | 5.5        | 7.7         | 1.3   | 1.3   | 85.5    |

1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게재생략

12.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면적(㎡)   |     |         | 구성비(%) | 비 고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 계획관리지역 | 146,150 | -   | 146,150 | 100.0  |     |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br>표시<br>번호 | 구역명                     | 구역의<br>세 분 | 위 치                          | 면적(㎡)   |    |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기정 | -              | 금성지구<br>제2종지구<br>단위계획구역 | 산업형        | 하동군<br>금성면 갈사리<br>204-1번지 일원 | 146,150 | -  | 146,150 |    |

하 동 군 공 보

( 46 ) 제 453 호

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면 적(m <sup>2</sup> ) |     |         | 구성비(%) | 비 고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합 계    | 146,150              | -   | 146,150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107,970              | -   | 107,970 | 73.9   |     |
| 지원시설용지 | 4,680                | -   | 4,680   | 3.2    |     |
| 공공시설용지 | 32,800               | -   | 32,800  | 22.4   |     |
| 도 로    | 9,970                | -   | 9,970   | 6.8    |     |
| 주차장    | 2,360                | -   | 2,360   | 1.6    |     |
| 공 원    | 7,760                | -   | 7,760   | 5.3    |     |
| 완충녹지   | 12,710               | -   | 12,710  | 8.7    |     |
| 오수처리시설 | 700                  | -   | 700     | 0.5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도로 총괄표

| 류별 | 합 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m <sup>2</sup>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m <sup>2</sup>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m <sup>2</sup>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m <sup>2</sup> ) |
| 합계 | 3   | 672    | 9,970                | 1   | 284    | 3,010                | 2   | 388    | 6,960                | -   | -      | -                    |
| 중로 | 2   | 388    | 6,960                | -   | -      | -                    | 2   | 388    | 6,960                | -   | -      | -                    |
| 소로 | 1   | 284    | 3,010                | 1   | 284    | 3,010                | -   | -      | -                    | -   | -      | -                    |

도로결정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중로  | 2  | 1  | 15     | 국지 도로 | 180    | 갈사리 202-11 (금성해안도로) | 금성조선 농공단지 내        | 일반 도로 | -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    |
| 기정 | 중로  | 2  | 2  | 15     | 국지 도로 | 208    | 중로 2-1호선            | 금성조선 농공단지 내        | 일반 도로 | -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    |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국지 도로 | 284    | 갈사리 222-2 (금성해안도로)  | 갈사리 909-7 (금성해안도로) | 일반 도로 | -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    |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br>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 최초<br>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1          | 주차장 | 갈사리 202-18 | 2,360   | -  | 2,360 | 2009.12.7<br>(하동군고시<br>제2009-48호) |    |

다) 공원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br>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br>세분 | 위 치           | 면 적 (㎡) |    |       | 최초<br>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1          | 금성공원 | 소공원       | 갈사리<br>354-11 | 7,760   | -  | 7,760 | 2009.12.7<br>(하동군고시<br>제2009-48호) |    |

라) 녹지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br>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br>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최초<br>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            |               | 12,710  | -  | 12,710 |                                   |    |
| 기정 | 1          | 1호<br>완충녹지 | 완충<br>녹지   | 갈사리<br>222-2  | 7,486   | -  | 7,486  | 2009.12.7<br>(하동군고시<br>제2009-48호) |    |
| 기정 | 2          | 2호<br>완충녹지 | 완충<br>녹지   | 갈사리<br>202-18 | 5,224   | -  | 5,224  | 2009.12.7<br>(하동군고시<br>제2009-48호)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면<br>번호 | 가구<br>번호 | 면적(㎡)   | 획 지   |            |         | 비 고    |
|----------|----------|---------|-------|------------|---------|--------|
|          |          |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 합계       |          | 113,350 |       |            | 113,350 |        |
| -        | IBL      | 113,350 | 1BL-1 | 갈사리 204-1  | 77,320  | 산업시설용지 |
|          |          |         | 1BL-2 | 갈사리 202-18 | 7,180   |        |
|          |          |         | 1BL-3 | 갈사리 202-1  | 5,470   |        |
|          |          |         | 1BL-4 | 갈사리 221-1  | 18,000  |        |
|          |          |         | 1BL-5 | 갈사리 204-6  | 4,680   | 지원시설용지 |
|          |          |         | 1BL-6 | 갈사리 204-13 | 700     | 오수처리시설 |

하 동 군 공 보

( 48 ) 제 453 호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면<br>번호 | 위치<br>(가구 및<br>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1BL - 1<br>1BL - 2<br>1BL - 3<br>1BL - 4 | 용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가’ 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카’ 호 및 ‘타’ 호의 공장, ‘파’ 호의 창고시설</li> </ul> </li> <li>•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li> </ul> </li> </ul>  |
|          |  | 건폐율 | • 60%이하   |
|          |  | 용적률 | • 150%이하  |
|          |  | 높 이 | • 4층 이하   |
| -        | 1BL - 5                                  | 용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가’ 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li> <li>-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나’ 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다’ 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li> </ul> </li> <li>•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li> </ul> </li> </ul> |
|          |  | 건폐율 | • 60%이하   |
|          |  | 용적률 | • 150%이하  |
|          |  | 높 이 | • 4층 이하   |
| -        | 1BL - 6                                  | 용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li> </ul> </li> </ul>   |
|          |  | 건폐율 | • 60%이하   |
|          |  | 용적률 | • 150%이하  |
|          |  | 높 이 | • 4층 이하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면<br>번호 | 제어<br>요소   | 적용구간<br>(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 -        | 공공<br>보행통로 | 산업시설용지내<br>(중로2-2호선<br>~완충녹지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며, 보행동선의 연속성 및 안전성을 확보토록 계획함</li> <li>• 공공보행통로 폭 : 3m이상</li> </ul> |    |

라.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가) 총괄표

| 구 분      | 면 적 (㎡) |     |       | 비 고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공원면적     | 7,760   | -   | 7,760 |             |
| 시설면적계    | 998     | -   | 998   | 시설율 : 12.9% |
| 건축<br>면적 | 바닥면적    | -   | -     |             |
|          | 연면적     | -   | -     |             |

나)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 면 적 (㎡) |     |       | 비 고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합 계     | 7,760   | -   | 7,760 |             |
| 도로 및 광장 | 998     | -   | 998   |             |
| 녹 지     | 6,762   | -   | 6,762 | 녹지율 : 87.1% |

2) 세부시설조서

가) 도로 및 광장

| 구분 | 도면<br>번호 | 시설의<br>세분 | 위 치 | 부지면적<br>(㎡) | 건축규모(㎡) |     | 규 모 | 비 고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합         | 계   | 998         | -       | -   | -   |     |
| 기정 | 1        | 도로        | -   | 743         | -       | -   | -   |     |
| 기정 | 2        | 중앙광장      | -   | 117         | -       | -   | -   |     |
| 기정 | 3        | 휴게광장      | -   | 138         | -       | -   | -   |     |

하 동 군 공 보

( 50 ) 제 453 호

나) 녹지

| 구분  | 도면<br>번호 | 시설의<br>세분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규모(㎡) |     | 규 모 | 비 고 |
|-----|----------|-----------|-----|---------|-------|---------|-----|-----|-----|
|     |          |           |     | 기정      | 변경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합 계 |          |           |     | 6,762   | 6,762 | -       | -   | -   |     |
| 기정  | -        | 녹지        | -   | 6,762   | 6,762 | -       | -   | -   |     |

3) 도로조서 총괄표

| 구 분    |    |    | 합 계   |       | 중 로   |       | 소 로   |       |
|--------|----|----|-------|-------|-------|-------|-------|-------|
|        |    |    | 연장(m) | 면적(㎡) | 연장(m) | 면적(㎡) | 연장(m) | 면적(㎡) |
| 합 계    |    |    | 417   | 743   | -     | -     | 417   | 743   |
| 소<br>로 | 1류 | 기정 | -     | -     | -     | -     | -     | -     |
|        | 2류 | 기정 | -     | -     | -     | -     | -     | -     |
|        | 3류 | 기정 | 417   | 743   | -     | -     | 417   | 743   |

4) 세부도로조서

가) 소로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br>(m) | 면적<br>(㎡) | 기능  | 기점    | 종점    | 비고 |
|-----|----|----|----|-----|-----------|-----------|-----|-------|-------|----|
| 합 계 |    |    |    |     | 417       | 743       |     |       |       |    |
| 기정  | 소로 | 3  | 1  | 3.0 | 32        | 106       | 진입로 | 서측경계  | 동측경계  |    |
| 기정  | 소로 | 3  | 2  | 3.0 | 68        | 222       | 연결로 | 소로3-1 | 중앙광장  |    |
| 기정  | 소로 | 3  | 3  | 3.0 | 18        | 60        | 연결로 | 중앙광장  | 소로3-7 |    |
| 기정  | 소로 | 3  | 4  | 2.0 | 31        | 69        | 산책로 | 소로3-2 | 소로3-5 |    |
| 기정  | 소로 | 3  | 5  | 2.0 | 16        | 29        | 산책로 | 소로3-4 | 휴게광장  |    |
| 기정  | 소로 | 3  | 6  | 2.0 | 13        | 25        | 산책로 | 휴게광장  | 소로3-1 |    |
| 기정  | 소로 | 3  | 7  | 1.5 | 124       | 54        | 산책로 | 소로3-2 | 소로3-1 |    |
| 기정  | 소로 | 3  | 8  | 1.5 | 115       | 178       | 진입로 | 서측경계  | 남측경계  |    |

하동군 고시 제2016-22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110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29.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245-11 외 15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별 지 참 조(16건)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2.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하 동 군 공 보

( 52 ) 제 453 호

|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br>고시일 | 도로명<br>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건물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진교면 진교리<br>461-8     | 경상남도 하동군<br>진교면 민다리길<br>130-3 | 20160229     | 20070618   | 진교의 연원(淵源)을 적용하여<br>민다리길로 명명   |    |
| 건물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화개면 탑리 184           | 경상남도 하동군<br>화개면 쌍계로<br>245-11 | 20160229     | 20070618   |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br>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br>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br>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    |
| 건물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화개면 탑리 184,<br>182   | 경상남도 하동군<br>화개면 쌍계로<br>245-9  | 20160229     | 20070618   |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br>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br>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br>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    |
| 건물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악양면 매계리<br>325-4     | 경상남도 하동군<br>악양면 노전길<br>65-36  | 20160229     | 20070618   | 갈대가 많이 자라 붙여진<br>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화개면 부춘리<br>1079-1    | 경상남도 하동군<br>화개면 신기길<br>14-20  | 20160229     | 20070618   | 신기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적량면 관리 279-2         | 경상남도 하동군<br>적량면 금강길 49        | 20160229     | 20070618   | 마을앞에 흐르는 우계천의<br>물이 비단같이 아름다워<br>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옥종면 종화리 산<br>10, 340 | 경상남도 하동군<br>옥종면 신기동길<br>3-45  | 20160229     | 20080402   | 자연마을명 부여   |    |
| 건물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횡천면 횡천리 951          | 경상남도 하동군<br>횡천면 횡보길<br>169-33 | 20160229     | 20080402   | 횡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옥종면 청룡리<br>201-1     | 경상남도 하동군<br>옥종면 주포중앙길<br>36   | 20160229     | 20080402   | 주포 마을내 중앙길로 주포<br>중앙길로 명명  |    |
| 건물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고전면 전도리<br>998-9     | 경상남도 하동군<br>고전면 재첩길<br>237-6  | 20160229     | 20080402   | 도로변에 재첩마을이 분포하여<br>있어 지역적 특색을<br>도로명에 반영                               |    |
| 건물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횡천면 남산리<br>721-1     | 경상남도 하동군<br>횡천면 원곡길 85        | 20160229     | 20080402   | 원이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br>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금남면 덕천리<br>806-2     | 경상남도 하동군<br>금남면 작은삼내길<br>15   | 20160229     | 20080402   | 작은삼내라는 옛지명을 도로<br>명에 반영  |    |
| 건물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고전면 신월리<br>667-1     | 경상남도 하동군<br>고전면 냉정길<br>11-5   | 20160229     | 20080402   | 냉정이라는 자연마을이름<br>반영   |    |

## 하 동 군 공 보

( 53 ) 제 453 호

|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br>고시일 | 도로명<br>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건물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옥종면 공항리<br>395-6  | 경상남도 하동군<br>옥종면 공항길<br>286-39 | 20160229     | 20090302   | 공항리 법정리명을 도로명에<br>반영         |    |
| 건물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옥종면 법대리<br>산70-7  | 경상남도 하동군<br>옥종면 옥수로<br>110-31 | 20160229     | 20090702   | 행정구역명(옥종+수곡면)<br>활용          |    |
| 건물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금성면 가덕리<br>368-1, 371, 372,<br>373, 776-2,<br>375-1, 375-3,<br>776-1, 374 | 경상남도 하동군<br>금성면 해안로 46        | 20160229     | 20111019   | 해안을 따라 형성된 도로이<br>므로 해안로로 명명 |    |

## 섬진강 후계목 육묘장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하동군청(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는 『섬진강 후계목 육묘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2일

하 동 군 수

###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섬진강 후계목 육묘장 조성사업
- 나. 위 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31-6번지 일원
- 다. 사 업 량 : 육묘장 조성 A=899㎡
-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720일)
- 마.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 붙임 편입조서 참조

### 3. 토지·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6년 2월 22일 ~ 3월 8일(15일간)
-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섬진강관리 및 하동군 홈페이지
- 다. 이의신청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섬진강관리(☎ 055-880-2537~9)
- 라. 이의신청 방법 : 서면 신청

####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16년 3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 나. 보상금의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 다. 보상방법 : 협의 성립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압류 및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현금(계좌) 지급

#### 5.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나.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동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 기 타

- 가.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참고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에 따라 분할 예정이며 예상편입면적과 확정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및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다. 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섬진강관리(☎055-880-2537~9)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 동 군 공 보

( 56 ) 제 453 호

**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조서**

토지조서

|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       | 비 고 |
|------------|------------|--------------|----|------------|------------|------------------------|-------|-----|
|            |            |              |    |            |            | 주소                     | 성명    |     |
| 1          | 하동읍<br>광평리 | 431-6        | 전  | 17         | 17         | 서울시 노원구<br>월계동 534-198 | 신 현 권 |     |
| 2          | “          | 432-3        | 전  | 781        | 781        | 하동군 하동읍<br>나루터길 21-6   | 고 상 만 |     |
| 3          | “          | 432-9        | 전  | 101        | 101        |                        | 국토교통부 |     |
| <b>합 계</b> |            | <b>3 필 지</b> |    | <b>899</b> | <b>899</b> |                        |       |     |

물건조서

|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물건명  | 수 량        | 소 유 자                |       | 비 고 |
|------------|------------|-------|----|------|------------|----------------------|-------|-----|
|            |            |       |    |      |            | 주소                   | 성명    |     |
| 1          | 하동읍<br>광평리 | 432-3 | 전  | 매실나무 | 35주        | 하동군 하동읍<br>나루터길 21-6 | 고 상 만 |     |
| <b>합 계</b> |            |       |    |      | <b>35주</b> |                      |       |     |